

# 사 망 혜 택

## Death Benefits

일반혜택 플랜  
가입자들을 위한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

## 차 례

사망 혜택 범위	1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1
사망 혜택	2
혜택 플랜의 공동체적인 성격	2
사망 혜택 한눈에 보기	3
자격	4
현재 근무 중이거나, 장애 혹은 미고용 상태인 가입자들	4
은퇴한 가입자들	4
등록과 혜택 시작	4
비용	5
사망 혜택	5
현재 근무 중이거나, 장애 혹은 미고용 상태인 가입자들	5
은퇴시 사망 혜택에 등록이 되어있던 가입자들	9
Rule of 70을 충족시키는 은퇴시 사망 혜택에 등록이 안되어 있던 가입자들	9
혜택을 받기 위하여	10
사망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10
거절 되었을 때	10
플랜 수정과 종료	10
자세한 내용	10
용어 설명	11

## 사망 혜택 범위

이 책자는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일반 혜택 플랜 중 사망 장애 혜택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사망 혜택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 혜택이 계산되는 방법과 혼자된 배우자가 언제 혜택을 받게 되는지, 또 사망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장애 혜택에 관해서는 별도의 책자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장애 혜택 플랜의 규정은 공식적인 혜택 플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공식적인 규정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혜택 플랜 문서에 있는 규정과 조건들이 우선합니다.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에 속한 목회자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혜택,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은퇴 주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으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전화하여 알리게 하십시오. 해당 지역 담당팀은 사망 혜택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와 부양 자녀들은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ial Security, 800-772-1213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ssa.gov](http://www.ssa.gov)를 이용하십시오.

사망 혜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면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

### 전화

무료 전화 800-773-7752 (800-PRESPLAN)

TDD 877-522-7948

미국 밖에서 215-587-7200

Fax 215-587-6215

### 우편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 웹사이트

[pensions.org](http://pensions.org)

### 이메일

[memberservices@pensions.org](mailto:memberservices@pensions.org)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에 올라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로 전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망 혜택

미국 장로교의 혜택 플랜의 사망장애 플랜 중 사망 혜택은 갑작스런 수입 상실에 대비하여 자격이 되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유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가입자 가족의 재정적 계획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입자 사망시 수입 상실로부터 가족들을 돕기 위하여 혜택 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망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급여 지속 혜택 (Salary Continuation Benefit)
- 일괄 지급 사망 혜택 (Lump Sum Death Benefit)
- 시한부 사망 혜택 (Living Needs Benefit)
- 자녀 교육비 혜택. (Children's Educational Benefit)

Living Needs Benefit 은 가입자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24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가입자가 사망전에 Salary Continuation benefits과 Lump Sum Death Benefit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사망 당시 연금국에 들고 있던 가입자의 혜택 가입 상태와 혜택 범위 등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가 가진 혜택에 관하여 이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가입자는 개인 선택 추가 사망 혜택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 사망 혜택은 가입자 사망시 가족에게 추가로 재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입하기를 원하면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에 들어가서 Optional Death Benefits Program에 관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연금국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혜택 플랜

미국 장로교의 혜택 플랜은 가입자 공동체를 총체적으로 돕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금국은 의료 보험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을 위한 교회적인 의미로서의 공동 사회의 실체입니다. 성서에 근거한 공동체의 의미를 보면, 구성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과 교회들이 그들이 가진 능력과 물질을 동원하여 도와야 하는 모두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같이 ...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 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 전서 12장 12, 24-26절 NRSV

미국 장로교 전체 공동체는 가입자와 가족들 전체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비용을 수입과 재원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각 고용 기관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플랜 전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그 고용 기관에 고용된 가입자들만을 위한 혜택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 장로교에 속한 모든 고용 기관이 부담하는 총 플랜 비용을 공정한 방법으로 나눈 것입니다.

교회와 다른 고용 기관들이 지불하는 부담금은 가입자들의 실제 급여에 따라 책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기준하여 결정됩니다.

사망 혜택도 플랜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망혜택은 급여가 낮은 가입자들을 위하여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준액과 가입자의 고용 직급 분류에 따른 중간 급여액 중 더 높은 액수가 지불됩니다. 파트 타임일 때는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입자에게 부양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교육비 혜택도 지급됩니다.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가입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유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젊은 가입자는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하여 적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저축할 기간이 짧았을 것이며, 어린 부양가족은 더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 교육비, 집값, 등)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나이가 작을수록 많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30살에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급여 혹은 중간 급여액 중 높은 액수의 400%가 지급되며, 50세에 사망한 경우 100%가 지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사망 혜택

<b>플랜 종류</b>	고용인 사망 혜택 플랜
<b>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장애 부담금이 지불되고 있는 현재 근무중인 혜택 플랜 가입자 (장애자와 미고용인을 포함하여)</li> <li>• 자격이 되는 은퇴한 가입자</li> </ul>
<b>부담금 지불</b>	<p>가입자의 고용기관이 사망혜택을 위한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p> <p>가입자는 미고용인이 아닐 경우 부담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p>
<b>사망혜택 시작날짜</b>	<p>위임받은 목회자일 경우 등록 신청서에 요청한 시작날짜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직책에서 일하는 목회자나 일반 직원일 경우 요청한 날짜로부터 31일 안에 연금국이 신청서(Membership Application, ENR-001)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한 날로부터 31일 이후에 신청서를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찍힌 우편날짜가 시작날짜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고용기관이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대기기간을 적용한 것을 가정합니다.</p>
<b>현재 근무중 혹은 장애 혹은 미고용 상태인 가입자 를 위한 혜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달까지 급여 지속 혜택</li> <li>• 일괄 지급 사망 혜택</li> <li>• 자녀들의 교육비 혜택</li> <li>• 시한부 사망 혜택</li> </ul>
<b>자격이 되는 연금을 받는 은퇴한 가입자를 위한 혜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지속 혜택</li> <li>• 자녀들의 교육비 혜택</li> <li>• 시한부 사망 혜택</li> </ul>
<b>수혜자</b>	<p>등록 신청서를 보낼 때 수혜자를 지정합니다. 언제든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혜자를 지정하는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p>

## 자격요건

### 현재 근무중이거나, 장애자이거나 미고용 상태인 가입자

가입자가 의료 플랜과 연금 플랜에 들고 있을 경우 교회나 고용 기관은 반드시 사망장애 플랜에도 들어야 합니다. 장애자이거나 미고용 상태에 있는 가입자는 의료 플랜과 연금 플랜에 들고 있을 경우 사망장애 플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고용기관은 연금국에 등록 신청서 (ENR-001)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교회나 고용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풀타임 근무 시간수는 일주일에 35시간입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수가 20시간에서 34시간까지면 파트타임이 됩니다.

### 안수받은 목회자

모든 목회자는 청빙받은 날짜가 혜택 시작날짜가 됩니다. 장로교 헌법 (Book of Order, G-14.0506)에 의하면 위임받은 직책에 있는 모든 목회자(담임 목회자, 공동 목회자, 부 목회자, 지정 목회자)는 반드시 일반 혜택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반드시 들지 않아도 되는 고용인

일반교회, 대회/노회, 다른 기관은 각 고용 직급에 따라 (전문직 풀타임, 전문직 파트타임, 비전문직 풀타임, 비 전문직 파트타임) 고용인들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고용인은 일반 직원을 포함하여 임시 목회자 혹은 승인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포함합니다. 한 직급에 있는 고용인을 등록시키면 그 직급에 있는 고용인을 모두 등록시켜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위임받지 않은 직책에 있는 고용인은 고용된 지 첫 3년동안만 의료 플랜과 사망 장애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연금 플랜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미고용 상태인 가입자

자격이 되는 새로운 근무지를 찾는 동안 미고용 상태에 있는 가입자는 제한된 기간동안 혜택 플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 발행물인 Continuing Coverage at Termination of Eligible Service (PLN-205)를 참고하십시오. 미고용 상태에 있는 가입자는 의료 부담금 혹은 연금 부담금 혹은 둘다 들고 있을 경우 사망장애 혜택을 위한 부담금을 지불하면 사망 혜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망 혜택은 미고용 상태의 가입자의 연금과 사망장애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실제급여와 각 고용 직급의 중간 급여액 중 더 높은 액수에 기준하여 지불됩니다.

파트 타임일 경우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은퇴한 가입자

가입자가 은퇴할 당시 일반 혜택 플랜에 들고 있었을 경우 은퇴자를 위한 사망 혜택인 Salary Continuation Benefit, Children's Educational Benefit, Living Needs Benef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로서 사망장애 플랜에 들어있었으나 은퇴할 당시에는 들지 않고 있었다면 급여 지속 혜택으로 최소 일시불 일괄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ule of 70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자는 퇴직했을 때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 혜택플랜에 가입했어야 하며, 퇴직 나이와 혜택플랜에 가입한 연수를 합하여 70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등록과 혜택 시작 날짜

혜택 플랜의 사망 혜택에 가입하려면 등록 신청서 (ENR-001)를 기입하여 연금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교회나 고용 기관의 회계 혹은 대표자가 신청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직책에 있는 안수받은 목회자는 혜택 시작 날짜가 등록 신청서에 요청한 날이 되지만, 연금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일반 직원과 위임받지 않은 직책에서 근무하는 목회자의 혜택 시작날짜는 연금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요청한 혜택 시작 날짜로부터 31일이 지나서 신청서가 도착했으면 신청서에 찍힌 우편 날짜가 시작날짜가 됩니다. 이것은 신청서를 연금국이 받기 전에 대기기간를 모든 고용 기관이 가입자에게 적용한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 비용

사망혜택 플랜은 가입자가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 기관이 기본적인 사망 혜택을 위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은퇴한 후에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고용 기관은 연금국 이사회가 지정해 놓은 부담금을 각 가입자의 사망 혜택을 위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금 기준액은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나 목회자의 중간 급여(교회 전체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연간 중간 급여)의 25% 중 더 높은 액수가 됩니다.

가입자가 장애 상태에 있으면, 장애 혜택이 시작한 때부터 장애 기간동안 가입자나 고용 기관이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망 혜택은 (개인 선택 사망 혜택을 포함하여) 계속됩니다.

일반 혜택 플랜에 들고 있는 미고용 상태인 가입자는 사망 장애 부담금을 계속 지불할 수 있는데 이때 의료 혹은 연금 부담금과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 사망 혜택

현재 근무중이거나, 장애 혹은 미고용 상태의 가입자

### 급여 지속 혜택 (Salary Continuation Benefit)

사망혜택 플랜에 들고 있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가 받는 혜택은 가입자가 받던 연간 실제 급여와 (2006년 최대 연봉은 \$220,000, 2007년 \$225,000) 가입자의 고용 직급에 따른 전체 교회의 중간 급여액 중 더 높은 액수에 기준하여 결정됩니다. 이 때, 파트 타임일 경우 근무 시간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전체 교회 중간 급여 (Churchwide Median Salaries)

	2006	2007
목회자 (교회에서 시무하는 안수 받은 목회자들의 연간 중간 급여)	\$46,500	\$47,900
전문직 일반 직원	\$34,100	\$35,000
비전문직 일반 직원	\$25,100	\$26,000

급여 지속 혜택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가입자가 사망한 후 12 개월간 매달 같은 액수가 지불됩니다. 수혜자가 1명보다 많을 때에는 서면으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모든 수혜자에게 같은 액수가 나누어 지불됩니다. 가입자는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급여 지속 혜택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혜자 지정 양식 (Benefit Beneficiary Designation form, DBN-002)은 연금국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이 혜택은 다음의 순서로 자격이 되는 유가족들에게 지급됩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적어도 일년 전에 결혼했던 배우자
2. 미혼인 21세 미만의 부양 자녀와 사망 전 12개월 동안 부양했던 미혼인 21세 혹은 그 이상의 영구적으로 장애자가 된 자녀
3. 부양 상태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자의 자녀
4. 가입자의 에스테이트.

### 급여 지속 혜택의 예

가입자가 풀타임 안수받은 목회자였고 사망시 연간 실제 급여가 \$48,000 (2006년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전체 교회 중간 급여인 \$46,500 보다 높은) 일 때, 지정된 수혜자는 (혹은 자격이 되는 유가족) 급여 지속 혜택으로 매달 \$4,000(\$48,000 의 1/12)을 사망후 12개월간 받게 됩니다. 수혜자가 여러명이면 같은 액수가 나누어 지불됩니다.

만약 풀타임 안수받은 목회자의 실제 급여가 \$40,000이었으면 (2006년 중간급여인 \$46,500 보다 낮은) 지정된 수혜자는 (혹은 자격이 되는 유가족) 급여 지속 혜택으로 매달 \$3,876을 (전체 교회의 중간 급여인 \$46,500 의 1/12) 가입자 사망후 12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수혜자가 여러명일 때는 같은 액수가 나누어 지불됩니다. 가입자가 일주일에 35시간 보다 적게 근무했으면,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가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고 파트 타임 전문직 일반 직원이었던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가 \$15,000이었을 때 (2006년 전문직 일반 직원의 중간 급여인 \$34,055 보다 작은) 수혜자는 급여 지속 혜택으로 매달 \$1,622를 가입자 사망후 12개월간 받게 됩니다. 수혜자가 여러명이면 같은 액수가 나누어 지불됩니다. 근무 시간수에 따라 교회 전체 중간 급여에 의해 계산됩니다.

이 혜택을 계산하려면 일주일 근무시간수를 35 (풀타임 일주일 근무시간수)로 나눕니다. 전체 교회 중간 급여액을 여기에 곱하여 12로 나누면 매월 받을 사망 혜택 액수가 나옵니다.

$$20\text{시간} / 35\text{시간} = 0.5714$$

$$0.5714 \times \$34,055 = \text{연 } \$19,459 \text{ 혹은 월 } \$1,622$$

### 일괄지급 사망 혜택

-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입자
-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는 가입자

####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입자

사망 혜택 플랜에 들고 있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격이 되는 유가족은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은 최대 급여액 (\$90,000)까지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와 각 고용 직급에 따른 전체 교회 중간 급여액 중 (파트타임일 경우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된) 더 높은 액수에 나이에 따른 아래표의 %를 곱해서 계산 됩니다.

사망시 가입자 나이	혜택 %
31세 미만	400%
31세부터 32세 미만	380
32세부터 33세 미만	360
33세부터 34세 미만	340
34세부터 35세 미만	320
35세부터 36세 미만	300
36세부터 37세 미만	280
37세부터 38세 미만	260
38세부터 39세 미만	240
39세부터 40세 미만	220
40세부터 41세 미만	200
41세부터 42세 미만	190
42세부터 43세 미만	180
43세부터 44세 미만	170
44세부터 45세 미만	160
45세부터 46세 미만	150
46세부터 47세 미만	140
47세부터 48세 미만	130
48세부터 49세 미만	120
49세부터 50세 미만	110
50세 혹은 그 이상	100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격이 되는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1. 혼자된 배우자 (가입자 사망전 혹은 은퇴/장애 혜택이 시작되기 전 일년 이상 결혼 상태에 있던)
2. 21세 미만의 미혼인 부양 자녀, 가입자 사망 전 12개월동안 부양해 온 21세 혹은 그 이상의 영구적으로 장애자가 된 미혼 자녀
3. 부양 부모
4. 가입자 사망 전 12개월동안 부양해온 21세 미만의 미혼인 부양 형제들, 21세 혹은 그 이상인 영구적으로 장애자가 된 미혼 형제.

자격이 되는 유가족은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을 매월 나누어서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액수는 계리상으로 조정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입니다.

#### 자격이 되는 부양가족을 가진 가입자를 위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의 예

- 만약 가입자가 35살이고 풀타임 전문직 직원으로서 연간 실제 급여가 \$50,000 (2006년 전체 교회 중간 급여인 \$34,100 보다 많은)이고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있을 때, 가입자 사망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150,000 (\$50,000 의 300%)이 됩니다.
- 만약 가입자가 40세이고 풀타임 전문직 직원으로서 연간 실제 급여가 \$100,000 (2006년 전체 교회 중간 급여인 \$34,100 보다 많은)이고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있을 때, 가입자 사망시 일괄지급 사망 혜택은 \$180,000 (최대 급여액인 \$90,000 의 200%)이 됩니다.
- 가입자가 40세이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전문직 직원으로서 연간 실제 급여가 \$15,000 (2006년의 전체 교회 중간 급여인 \$34,100) 이고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있을 때, 가입자 사망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34,969.48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된 급여의 200%)이 됩니다. 전문직 일반 직원의 중간 급여가 파트 타임 시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20(\text{일주일 근무 시간수})/35(\text{풀타임 근무 시간수}) = 0.5714$$

$$0.5714 \times \$34,100(\text{2006년 전체 교회 중간 급여액}) = \$19,484.74$$

$$\$19,484.74 \times 200\%(\text{나이에 따른 일괄 지급 혜택표}) = \$38,969.48$$

####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는 가입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을 경우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가입자의 에스테이트로 지급됩니다. 에스테이트로 지불되는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은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액이나 (최대 급여 \$90,000) 고용 직급에 따른 교회 전체 중간 급여 중 더 큰 액수의 100%가 됩니다. 파트 타임일 때는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는 가입자를 위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의 예

- 가입자가 45세이고 풀타임 전문직 직원으로서 연간 실제 급여가 \$45,000 (2006년 중간 급여인 \$34,100 보다 많은)이고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을 때, 가입자의 에스테이트는 가입자 사망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으로 \$45,000을 지급받습니다.
- 가입자가 35세이고 풀타임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연간 실제 급여가 \$28,000이고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을 때, 가입자의 에스테이트는 가입자 사망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으로 2006년의 중간 급여인 \$46,500을 지급받습니다.

#### 자녀 교육비 혜택

사망 혜택에 들고 있던 가입자가 25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둔 채로 사망했을 때 각 자녀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비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동안 매년 \$9,000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후에 생긴 교육비가 해당되며 자격이 되는 각 자녀의 최대한 혜택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등록처에서 발행하는 풀타임 학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장애 플랜은 가입자 사망전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소급하여 지불하지 않으며 가입자 사망후 발생한 첫 4년동안의 교육비만을 보조합니다. 대학원 학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격이 되는 부양 자녀가 3년만에 학부 과정을 마치면 연금국은 다음 대학원 1년간의 교육비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대학에 진학할 때 연금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연금국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17세가 될 때 연락하여 이 혜택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 혜택의 예

가입자 사망시 부양 자녀들의 나이가 15, 20, 23 일 때,

- 23살인 자녀가 4년제 대학 과정 중 2년을 마친 상태라면, 그 자녀는 25세 전까지 아무 때나 나머지 2년간의 교육비 혜택을 (최대 액수 \$18,000)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자녀는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25세 전까지 4년간의 교육비 혜택을 (최대 \$36,000) 가입자 사망후 4년간 대학과정을 위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번째 자녀는 25세 전까지 4년간의 교육비 혜택을 (최대 \$36,000) 가입자 사망후 4년간 대학과정을 위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한부 사망 혜택 (Living Needs Benefit)

담당 의사가 24 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 상태의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가입자는 자신의 사망 혜택의 일부를 미리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가장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혜택은 플랜 가입자에게만 지불되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시한부 사망 혜택은 계리상 현재 가치로 계산된 급여 지속 혜택의 100 %와 혹은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이 없는 가입자를 위한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의 75%입니다. 계리상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플랜 계리사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혜택의 액면가에 수명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숫자들은 플랜 비용을 계산할 때 계리사들이 사용하는 수명과 이자율 가정에 기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자의 병과 상처를 자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장애 혜택이 시작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
- 가입자가 혜택을 이미 양도했을 경우
- 파산 등의 이유로 가입자가 채권자에게 사망혜택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졌을 때
- 정부 기관에 의해 혜택을 정부에 주도록 요청되었을 때.

가입자는 시한부 사망 혜택(Living Needs Benefits)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액수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양식을 포함하는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가입자의 담당의사가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금국은 다른 의사의 소견을 자체 비용으로 받을 것입니다.

연금국이 이 혜택을 위한 신청서를 승인하면 가입자는 급여 지속 혜택과 일괄 지급 사망 혜택중 하나, 혹은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은 이 사망 혜택은 가입자 사망시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 시한부 사망 혜택의 예

연금국은 가입자의 서면 신청서를 승인하고 의사가 이 혜택을 승인했다고 가정합니다.

- 가입자가 안수받은 목회자이고 치명적인 병이 걸릴 당시 연간 실제 급여가 \$50,000일 때 이 액수는 2006년의 중간 급여인 \$46,500 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가입자는 급여 지속 혜택으로 \$50,000 의 계리상 현재 가치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더 많이 원하면 일괄 지급 사망 혜택으로 \$37,500 (\$50,000 의 75%) 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병이 걸릴 당시 연간 실제 급여가 \$91,000 일 때 이 액수는 2006년의 중간 급여인 \$46,500 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가입자는 \$91,000 의 계리상의 현재 가치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괄 지급 사망 혜택으로 \$67,500 (최대 액수인 \$90,000의 75%) 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은퇴한 가입자

### 급여 지속 혜택

은퇴자를 위한 급여 지속 혜택하에 사망 혜택은 가입자의 은퇴시 마지막 연간 실제 급여와 (최대 한도액까지) 고용 직급에 따른 전체 교회 중간 급여 중 더 큰 액수와 같으며, 자격이 되는 근무 기관에서 은퇴한 지 3개월마다 1/12 씩 혜택이 줄어듭니다.

급여 지속 혜택은 가입자 사망후 12 개월동안 같은 액수가 나누어 지급됩니다. 최소 액수는 \$6,000 입니다. 은퇴한지 3년후에는 (3개월씩 12번이 지나면) 혜택은 \$6,000이 되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공식에 의해 혜택이 \$6,000이하로 떨어지면, 일시불로 \$6,000이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해당 양식(Salary Continuation Benefit Beneficiary Designation form, DBN-002)을 사용하여 원하는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는 유가족에게 다음의 순서로 지급됩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적어도 일년 전에 결혼했던 배우자
2. 미혼인 21세 미만의 부양 자녀와 사망 전 12개월 동안 부양했던 미혼인 21세 혹은 그 이상의 영구적으로 장애자인 자녀
3. 부양 상태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자의 자녀
4. 가입자의 에스테이트.

### 급여 지속 혜택의 예

은퇴시 풀타임 연간 실제 급여로 \$40,000를 받던 안수 받은 가입자가 2006년 2월 1일에 은퇴했다면, 가입자가 지정한 수혜자는 2006년 은퇴당시 안수받은 목회자의 중간 급여인 \$46,500에 기준하여 12번에 걸친 사망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기	수혜자가 받는 혜택
200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46,500
200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42,625 (중간 급여의 11/12)
200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38,750 (중간 급여의 10/12)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 사이 매 3개월마다 1/12 씩 줄어듭니다	\$34,875 (중간 급여의 9/12)

한 전문직 일반 직원이 은퇴시 \$36,000을 받다가 2006년 2월 1일 은퇴했다면, 가입자가 지정한 수혜자는 2006년 전문직 일반 직원의 중간 급여인 \$34,055 보다 가입자가 급여가 많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은퇴시 실제 급여에 기준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 사망 시기	수혜자가 받는 혜택
200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36,000
200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33,000 (실제 급여의 11/12)
200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30,000 (실제 급여의 10/12)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사이 매 3개월마다 1/12씩 줄어듭니다	\$27,000 (실제 급여의 9/12)

### Rule of 70 규정을 충족하나 은퇴시 사망보험에 등록하고 있지 않던 가입자

은퇴시 사망보험에 들고있지 않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수혜자가 급여지속혜택으로 일시불로 최소액인 \$6,000을 받게 됩니다.

## 자녀 교육비 혜택 (Children's Educational Benefit)

자격이 되는 25세 미만의 가입자의 부양 자녀는 자녀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시한부 사망 혜택 (Living Needs Benefit)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가입자가 생전에 미리 시한부 사망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연금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액수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양식을 포함하는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가입자의 담당 의사가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금국은 다른 의사의 소견을 자체 비용으로 받습니다.

은퇴한 가입자는 시한부 사망 혜택으로 최소 급여 지속 혜택인 \$6,000을 기준으로 계리상으로 조정된 현재 가치와 같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계리상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플랜 계리사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혜택의 액면가에 수명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숫자들은 플랜 비용을 계산할 때 계리사들이 사용하는 수명과 이자율 가정에 기준합니다.

## 혜택을 요청하려면

### 사망혜택 신청 방법

가입자가 사망한 것을 연금국에 알리면, 연금국은 해당 수혜자, 부양 가족, 에스테이트 담당자에게 Death Benefits Claim form (DBN-600)을 보냅니다. 수혜자나 담당자는 연금국 지역 담당팀,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이 양식을 요청하고 기입하는데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혜택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사망 증명서가 (Death Certificate) 필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으면 연금국은 사망 혜택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망 혜택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입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국에 전화하여 그 양식을 요청해도 되고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을 이용해도 됩니다.

## 사망 혜택 지불 요청이 거절되면

사망혜택이 전체 혹은 일부가 지불되지 않으면 수혜자는 연금국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설명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망 혜택이 지불되지 않는 특정한 이유,
- 혜택 지불을 막는 특정한 사망장애 플랜 규정,
- 다시 요청하려면 필요한 추가 정보 요구,
- 재심 요청을 위한 플랜 절차 설명.

수혜자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하거나 “Appeals Process Guidelines”를 요청하십시오.

## 플랜 수정과 종료

혜택 플랜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연금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연금국은 총회, 플랜 가입자, 교회 그리고 노회로 사망 장애 플랜의 변경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고용 기관과 연금국은 사망 장애 플랜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도 좋으나, 연금국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아무 때나 이 플랜과 규정을 변경, 종료,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이 책자는 사망장애 플랜의 규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규정 전문은 미국 장로교의 공식적인 혜택 플랜에 있습니다. 이 책자와 혜택 플랜 문서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혜택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질문이나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800-773-7752 (800-PRESPLAN)

일반적인 플랜 내용과 양식을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Actuarial Present Value*

#### (보험 계리상 현재 가치)

현재 달러로 계산된 혜택 지불금 혹은 앞으로 지급될 혜택 지불금 가치. 보험 계리상 산정되는 현재 가치는 미래의 이자 축적과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래에 지불될 액수보다 줄어듭니다.

### *Actuarial Assumptions* (보험 계리상 가정)

보험 계리사들이 미래의 혜택 비용을 예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요소들. 여기에는 플랜 비용, 회전율, 사망율, 이자율, 연금과 의료비를 위해 가정하는 은퇴 나이, 의료 서비스 이용 추세 등이 포함됩니다.

### *Actuarial Equivalent* (보험 계리상 상응치)

보험 계리상 가정에 기준하여 다른 형태의 지불방식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의 계리상 상응하는 현재 가치.

### *Church Plan* (교회 플랜)

목회자와 일반 직원들을 위하여 종교적인 기관들이 후원하는 혜택 플랜. 교회 플랜은 Internal Revenue Code 보고와 공개 규정에서 면제되며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에서도 면제됩니다.

### *Death Benefits Basis* (사망 혜택 기준)

사망 혜택은 가입자의 연금 참여 기준액이나 고용 직급에 따른 연금국 이사회가 정해놓은 전체 교회 중간 급여액 중 더 큰 액수에 기준합니다. 상응하는 고용 직급은 연금국이 결정합니다.

### *Dues* (부담금)

부담금은 혜택 플랜의 총비용을 각 고용 기관이 분담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부담금은 각 가입자 개인의 혜택에 관련된 액수가 아니며 플랜의 총 비용을 여러 고용 기관들이 공정하게 나눈 액수를 말합니다. 부담금은 실제 급여에 기준하여 계산됩니다.

### *Effective Salary* (실제 급여)

실제 급여는 플랜 가입자가 한 해동안 고용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말하며, 여기에는 주택비 (유틸리티와 가구비를 포함하여) 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급여에는 그 해동안 고용 기관이 가입자에게 약속한 지불이 연기된 보수도 (자금이 확보된 것과 안된 것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좌 환불 플랜을 통하여 환불 받은 직무 수행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목회자의 Self Employment Contribution Act에 의한 Social Security 부담금도 50%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목회자일 때 주택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교회 사택에 살 경우 주택비는 위에 열거한 모든 급여액의 적어도 30%가 넘어야 합니다. 사택이 아닐 경우에는 실제 주택에 들어간 비용이 됩니다.

### *Living Needs Benefit* (시한부 사망 혜택)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망장애 혜택에 들고 있는 가입자를 위한 사망 혜택의 일부로서 사망하기 전에 미리 받는 사망 혜택.



## 미국장로교연금국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800-773-7752 • 800-PRESPLAN •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

© 2007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USA)